

일반인의 법적 판단: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피고인 유죄성의 효과

한 유 화^{1)2)†} 이 채 윤¹⁾ 이 한 희¹⁾ 정 현 우¹⁾

¹⁾충북대학교 심리학과 ²⁾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본 연구는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 \times 2 \times 2$ 완전교차요인 설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배심원 자격이 있는 일반 성인 1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은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따라 달라졌으며, 유무죄 판단의 확신감은 살인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더 낮았다. 살인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강한 양형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양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양형 판단의 정적 관련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반인들은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경우와 달리 피해자 역할이 있는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따라 피해자 책임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할이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지각된 유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 책임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이 법적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배심원의 합리적인 법적 판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및 제도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 유무죄 판단, 양형 판단

† 교신저자: 한유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E-mail: yuhwahan82@gmail.com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범죄사건의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피해자를 안타까워하고 가해자를 비난하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사기와 같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피해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 몇몇 연구들은 범죄유형(조은경, 박지선, 2020; Bieneck & Krahé, 2010; Brems & Wagner, 1994; Brownlow, Martinez, Porter, & Rosko, 2023; Dyer, Pizarro, & Ariely, 2022)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특성(김보경 등, 2020; 박희찬, 김혜숙, 2010, 양동옥 등, 2012; 조은경, 박지선, 2020; Delker et al., 2024; Genschow & Vehlow, 2021; Niemi & Young, 2016; Witte & Flechsenhar, 2025)에 따라 일반인의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처벌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 비난이나 가해자 처벌 판단의 법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 비난이나 가해자 처벌이 범죄사건이나 판단 대상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을 다룬는 심리학적 연구들은 많지만, 그 연구 결과를 실제 배심원들의 법적 판단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일반인 판단의 법적 합리성이 이해되어야 한다.

범죄사건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게 범죄사건의 책임을 일부 부과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감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즉, 어떤 범죄사건은 그 발생과 결과에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피해자의 책임이 고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폭행 사건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하며 재판에서의 피고인이 반드시 범죄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사건은 범죄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발생과 결과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범죄의 발생에 피해자의 법적 책임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부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다룬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성범죄나 범죄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이 일어나는 것이 부당한 경우로 제한적인 상황을 다루며 피해자 비난의 편견적 요소를 찾는 데 집중되어왔다. 이 편견적 효과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특성인지, 특정 범죄유형의 특성인지 또는 연구된 구체적인 상황의 특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가 피해자의 책임이 명백히 있고, 그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경우에도 관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책임판단이 범죄사건의 원인을 어딘가에 귀속시키는 과정인 귀인(attribution, Kelly, 1973)의 결과라면 그 과정이 타당한 정보(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과정인지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요인에 의한 자동적이고 편향적인 과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을 조작한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임 지각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범죄유형에서 법적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을 조작하여 법적 판단에 대한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의 법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배심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심리학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유형과 법적 책임판단

범죄사건을 강력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하는 것은 범죄피해의 심각성이나 죄질의 경중에 따른 구분이다. 범죄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는 피해자와加害者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도 있으며(예를 들면, 강도 vs. 사이버 폭력), 어떤 범죄의 피해자는 수동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범죄도 있다(예를 들면, 테러 vs. 보이스 피싱). 이렇게 범죄의 유형을 범죄자-피해자의 대면 여부나 피해자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재판은 범죄사건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어떤 형벌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재판에서의 책임판단을 위해서는 범죄사건의 발생 과정과 해당 사건에서加害者 및 피해자 행위의 관계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범죄사건의 경우加害者에 대해 판단(특히 양형)하기 위해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는 범죄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역할이加害者の 법적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이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한, 이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범죄사건의 책임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이 요소는 행위와 관련된 요소로 '피해자 유발'이라고도 한다.)加害者の 책임을 감경해 줄 수 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의결하고 의견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형 판단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는 어렵다. 현재 마련된 양형기준은 약 48개 주

요 범죄에 대한 것이며, 세 단계로 구성된 권고 영역의 범위(감경, 기본, 가중 영역)에 정해진 형량범위의 구간을 기본으로 하되 각 사건에 포함된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양형의 권고 영역과 형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인들을 양형 인자라고 한다. 양형인자는 그 기본적 성격(행위 인자, 행위자인자/기타인자),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데 영향을 주는 내용(가중인자와 감경인자)과 그 정도(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구분된다. 양형의 권고 영역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되고 형량의 범위는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발생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피해자 유발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에 속하는 행위인자와 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48개 주요 범죄 중 살인, 사기, 폭력 및 교통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감경요소로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양형위원회, 202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양형위원회, 2023). 어떤 범죄는 범죄사건의 책임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加害者の 형벌이 달라지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피해자에게 범죄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 범죄 피해자의 경우, 다른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조은경, 박지선, 2020),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무엇이든加害者에 대한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한 어떤 행위도加害者에 대한 형의 감경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성범죄는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역할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 범죄이지만 일반인들은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비난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판단을 낮출 수 있다(양동옥 등, 2012; Bieneck & Krahé, 2010; Dyer et al., 2022)는 점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법적 판단과 귀인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나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그 행위 또는 사건의 발생원인을 추론 한다. 이 추론 과정이 귀인이다(Kelley, 1973). 법적 책임판단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며 범죄사건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이므로 이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귀인은 자동적인 과정이며(권준모, 이홍구, 이수정, 1998),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행위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향을 근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Jones & Harris, 1967)라고 한다. 이 경향성은 행위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 근본귀인오류는 인간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즉각적인 판단에서 이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편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귀인 편향은 인지적 욕구가 높거나(D'Agostino & Fincher-Kiefer, 1992), 인지적 자원이 충분할 때(Pendry & Macrae, 1994) 감소한다.

귀인의 편향성에는 고정관념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정관념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신념으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행동보다 행위자의 내적 속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백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참가자들은 백인의 경우 사기,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귀인하고 더 엄격한 판결을 하였다

(Bodenhausen & Wyer, 1985). 김혜숙(1993)은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부정적 행동을 더 지속적인 행동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들은 가해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강도를 많이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인의 사기범죄를 동남아인의 사기범죄보다 성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범죄사건의 책임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내적 속성으로 여겨진다면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의 책임판단

피해자 비난이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Karman, 1984). 피해자 비난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Witte와 Flechsenhar(2025)는 정의로운 세상 신념이 피해자 비난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의로운 세상 신념과 종교적 세계관, 정치적 사상을 통제하였을 때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쳤다(Genschow & Vehlow, 2021). 한 연구에서 판단자는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한 경우 일탈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했으며, 같은 연구에서 판단자의 강간 통념은 피해자의 책임과 고통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김보경 등, 2020).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판단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판단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판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신념, 범죄사건 당시 또는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체계 정당화 신념이 높을수록 참가자들은 가해자를 더 옹호했고 피해자를 덜 옹호하였으며(Delker et al., 2024), 의리, 권위에 대한 복종

및 순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에게 비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하였고,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Niemi & Young, 2016). 양동옥 등(2012)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옷차림에 노출이 심할수록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더 비난했고 피해자가 노출이 적은 옷차림일 때보다 많은 옷차림일 때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책임의 상관은 -.37이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을 더 크게, 피해자 비난을 더 적게 하였다(임하연, 박지선, 2023). 또 다른 연구는 참가자들이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경험이 있으면 피해자를 덜 비난하고 가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사건을 더 심각한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omer & Guter, 2025).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판단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이 두 변인이 서로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된 관련 변인들은 주로 판단자의 신념이나 범죄 특성(주로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특성)이었다. 판단자들의 신념은 개인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 경험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편견에 의한 것이다. 요약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판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편견적인 요소들을 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유형과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

피해자와 가해자 책임판단의 관련성은 다양한 범죄유형에서 관찰된다(Dyer et al., 2022). 일부 선행연구들은 성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을 비교하거나 성범

죄와 무관한 다른 범죄유형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범죄유형을 성폭력과 절도로 조작한 한 연구에서는 범죄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성폭력에서만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키고 피고인 비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ieneck & Krahé, 2010). 성범죄와 비성범죄(폭행)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덜 비난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는 각각 대인폭력허용도와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경, 박지선, 2020). Brems와 Wagner(1994)의 연구에 따르면 애매한 범죄 상황에서 여성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을 보이는 참가자일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를 덜 탓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장간보다 절도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절도보다 장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rownlow, Martinez, Porter와 Rosko(2023)는 강도와 사기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행동을 조작하여 사기에서만 피해자 행동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yer 등(2022)은 절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부주의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조작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 비난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의 부주의함에 대해 알고 있는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피해자 비난이 높고 가해자 비난이 낮아졌다. 이 두 연구의 특징은 범죄유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과 의도를 직접 조작하여 피해자/가해자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연구는 모두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이며 조작된 피해자의 행동은 모두 한국의 양형에는 고려되지 않는 법적 판단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동 즉, 범죄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 판단에 피해자의 행위가 고려

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이다. 따라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에 피해자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위를 조작하여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현재까지 수행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다룬 연구는 주로 편견적 요소만을 제한적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범죄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판단에는 범죄의 유형,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범죄는 피해자의 역할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고 어떤 범죄는 그렇지 않다. 반면에 모든 범죄에서 범죄행위자인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대한 유무죄 뿐만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을 조작하여 일반인들의 법적 책임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함으로써 일반인의 법적 판단이 법적 요구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일반인들이 법적 책임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선택하여 고려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하는 법적으로 합리적인 추론과 일관적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였다.

독립변인 수준의 선택과 조작의 논리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범죄유형(2: 살인/성폭력), 피해자 역할(2: 없음/있음)과 피고인 유죄성(2: 낮음/높음)이다. 범죄유형은 일반인 법적 책임판단의 합리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변인이며 피해자 역할은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

사건 발생과 관련 있는지를 의미한다(양형기준에서는 범죄에 따라 ‘피해자 유발’ 또는 ‘범죄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표현되지만 본 연구의 두 범죄유형 중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역할’을 변인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작된 두 수준의 범죄유형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살인(피해자의 행위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음)과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성폭력(피해자의 행위를 양형에 고려할 수 없음)이었다. 살인과 성폭력은 각각 피해자의 행위가 양형인자인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 행위가 양형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피해자의 행위를 고려한다(예를 들면, 양동우 등, 2012; Bieneck & Krahé, 2010). 성범죄는 대인범죄이면서 대중에게 인지되는 심각성은 다른 범죄들보다 살인과 유사하다(박철현, 박성훈,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살인을 피해자 행위가 양형인자인 범죄 즉, 피해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를 피해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로 선택하여 범죄유형의 두 수준을 조작하였다. 일반인들의 판단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부합한다면 살인에서는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달라질 것이고 성폭력에서는 피해자 역할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상호작용). 피해자 역할은 피해자 비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로 피해자 비난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역할을 피해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즉, 범죄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조건(피해자 역할 있음)과 중립적인 행위를 하는 조건(피해자 역할 없음)의 두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다만, 성폭력 조건에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사건의 발생과 관련되고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조건으

로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을 구성하였다. 일반인들의 피해자 비난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본 연구의 피해자 역할이 있으면서 피해자 유발을 고려하는 범죄유형(살인) 조건에서 피해자 비난이 높을 것이다. 피해자 유발을 고려하지 않는 범죄유형(성폭력)의 피해자의 부정적 행위가 제시된 조건에서 피해자 비난이 높다면 피해자 비난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법적 판단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 즉,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독립변인인 피고인 유죄성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판단에서는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유죄성이 높을 때 가해자의 책임은 높게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 유죄성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와는 무관하므로 피해자 비난에 독자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책임판단과 피해자 비난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유죄성은 범죄유형이나 피해자 역할과 상호작용하여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유죄성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및 판단 확신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은 상호작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유무죄 판단, 판단 확신감 및 양형)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법의 요구와 부합한다면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피해자 역할의 효과가 있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없을 것이다.

연구 방법

참가자

본 연구의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대학의 온라인 게시판 및 SNS

의 오픈 채팅방)에 게시된 연구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집 공고에 포함된 참여링크에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참여 방법 안내와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차례로 제시되었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본 실험에 진행되는 링크로 연결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 도중 불이익 없이 실험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실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모두 169명이었으나 수집과정에서 중복으로 응답한 사례와 주의점검을 위해 실시한 다섯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오답한 사례는 제외하고 총 1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 중 남성은 88명(65.2%), 여성은 47명(34.8%)이었고 평균 연령은 30.9세($SD=12.0$)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본 연구는 범죄유형(2: 살인/성폭력), 피해자 역할(2: 없음/있음)과 피고인 유죄성(2: 낮음/높음)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 \times 2 \times 2$ 의 완전교차요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실험조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로 묘사되었다. 피해자는 부하직원으로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기술되었고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사 내로 고정되어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범죄유형은 살인과 성폭력의 두 수준으로 조작되었는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은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 유발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이고 성폭력은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없는 범죄(피해자 행위와 관련된 감경/가중 사유 없음)이다. 살인과 성폭력으로 조작된 범죄유형의 재판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각각 고의성과 관계의 강압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피해자 역할은 살인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에 있었던 다툼에서 피해자 행위의 폭력성으로 조작되었고 성폭력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

에 피해자가 유발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피고인의 유죄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피고인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정도로 조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사건의 생점이 되는 살인의 계획 정도(고의성)와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도(강압성)가 달라지도록 조작하였다.

절차 및 변인의 측정

실험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여덟 개 실험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시나리오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판단 및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질문과 성별, 연령 및 배심원 경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질문에 응답한 후 참가자는 실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응답을 제출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나리오 예시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대한 확신감, 양형 판단,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피해자의 책임이 측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판단은 본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귀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판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론을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제시된 범죄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질문은 주의점검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혐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설명, 판사의 지침 내용을 묻는 다섯 개의 선다형 질문이었다. 시나리오의 피고인에 대해 참가자들은 '귀하가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에게 어떤 평결을 내리시겠습니까?'의 문항에 유죄 또는 무죄의 이분형 응답을 하였고,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양형을

판단하였다. 양형 판단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4/robb_01.jsp)을 참고하여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의 범위를 임의로 네 개에서 다섯 개 수준으로 범주화하고 '기타' 범주를 추가한 선다형 문항('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측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과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을 측정하였다.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판단 확신감은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0%에서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100% 사이의 값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책임이 없다(1점)'에서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건에 대한 귀인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자유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귀인과 양형 판단 변인의 (재)범주화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제시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은 귀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일탈행위, 자격지심, 별 이유 없을 것 같음 등 이유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나 정서 또는 행위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응답, 또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응답)를 제외하고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자료화하였다. 각 범주로 자료화된 응답 예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네 개의 범주는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귀인', 행위자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놓인 상황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상황 귀인', 피해자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귀인',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상황, 피해자와 상황을 모두 포괄적 원인으로 지목한 '행위자/상

표 1. 귀인 범주의 응답 예시

귀인 범주	분류 기준	자료화된 응답 예시
피고인 귀인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장난으로 치부한 피고인의 태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통지를 받아 분노에 의해 피해자를 살인하였습니다.
상황 귀인	행위자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놓인 상황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갈등 - 폐쇄적인 상황
피해자 귀인	피해자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인격모독
행위자/상황 동시 귀인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상황, 피해자와 상황을 포괄적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피해자의 단호하지 않은 대처 - 피고인의 조절력부족,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행동들

황 동시 귀인'이었다. 응답의 범주화는 연구자 4인이 독립적으로 범주화한 후 논의를 통해 불일치 의견을 재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범주화의 일치율은 약 74.5%(137개 응답 중 102개 응답, 이 중 두 개 자료는 제외기준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됨)였다. 네 수준으로 범주화된 귀인은 유무죄 판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양형 판단에 사용한 선택지는 각 범죄유형에서 달랐다. 두 범죄의 가능한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 양형 판단은 직접 비교될 수 없으므로 서열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형 판단은 각 범죄의 기본 양형을 포함하는 선택지(살인에 대해서 “10년~17년 미만”, 성폭력에 대해서 “2년 6개월~4년 미만”과 “4년~5년 미만”)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주화 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선택지는 ‘중간 양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중간 양형보다 낮은 형을 포함하는 선택지는 ‘약한 양형(살인에 대해서 “3년~7년 미만”과 “7년~10년 미만”, 성폭력에 대해서 “1년 6개월~2년 6개월 미만”), 중간 양형보다 높은 형을 포함하는 선택지는 ‘강한 양형(살인에 대해서 “17년~20년”과 “20년 이상, 무기”, 성폭력에 대해서 “5년~7년”)’으로 명명하였

다. 따라서 양형 판단은 ‘약한 양형’, ‘중간 양형’, ‘강한 양형’의 서열화된 세 수준을 가지는 서열변인이다.

조작점검 및 분석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조작점검이 필요한 피해자 역할과 피고인 유죄성에 대한 조작점검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역할이 전혀 없는 조건과 있는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지각한 피해자 책임은 피해자 역할이 없는 조건($M = 2.71, SD = 1.64$)보다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M = 3.67, SD = 1.75$)에서 높아서 피해자 역할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었다($t(133) = -3.31, p < .01$). 그러나, 피고인 유죄성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지각한 피고인 유죄 가능성(각각 74.85와 79.03)은 다르지 않았다($t(133) = 1.15, p =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작한 변인인 피고인 유죄성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피고인의 유죄성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바, 다른 변인들의 정확한 효과추정과 피고인 유죄성의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작점검 측정치인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는 성폭력 사건에 관한 시나리오가 사용되어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조은경, 박지선, 2020) 귀인과 유무죄 판단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교차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모든 분석은 Rstudio(R버전 4.4.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교차분석과 중다회귀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R의 기본함수(chisq.test, lm, glm)를 적용하였다. 모형비교를 위해서는 “lmtest” 패키지의 lrtest함수를 사용하였고, 양형 판단 분석을 위한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ordinal”패키지의 clm함수를 적용하였다.

결과

기술통계

실험조건에 따른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지각된 피해자 책임,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범주변인인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응답빈도와 실험조건 내 응답범주의 비율(%)을 보고하였고 연속변인인 지각된 피해자 책임과 지각된 유죄가능성,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에 대해서는 평균(표준편차)을 보고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실험조건에 할당된 참가자의 수는 13명에서 20명이었다. 모든 조건에서 유죄 판단 비율(61.1%~100.0%)이 무죄

표 2. 실험조건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범죄유형		살인				성폭력			
피해자 역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유죄성	유무죄 판단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N		18(100.0%)	15(100.0%)	16(100.0%)	20(100.0%)	17(100.0%)	18(100.0%)	13(100.0%)	18(100.0%)
유무죄 판단									
유죄		17(94.4%)	15(100.0%)	16(100.0%)	16(80.0%)	15(88.2%)	16(88.9%)	11(84.6%)	11(61.1%)
무죄		1(5.6%)	0(0.0%)	0(0.00%)	4(20.0%)	2(11.8%)	2(11.1%)	2(15.4%)	7(38.9%)
양형									
약한 형량		9(50.0%)	9(60.0%)	9(56.3%)	13(65.0%)	4(23.5%)	4(22.2%)	6(46.2%)	3(16.7%)
중간 형량		5(27.8%)	3(20.0%)	2(12.5%)	1(5.0%)	8(47.1%)	8(44.4%)	4(30.8%)	3(16.7%)
강한 형량		3(16.7%)	3(20.0%)	5(31.3%)	1(5.0%)	3(17.6%)	3(16.7%)	0(0.0%)	3(16.7%)
기타 (무죄 포함)		1(5.6%)	0(0.0%)	0(0.0%)	5(25.0%)	2(11.8%)	3(16.7%)	3(23.1%)	9(50.0%)
지각된 피해자 책임		3.28 (1.81)	3.53 (1.51)	4.13 (1.67)	4.05 (1.61)	2.24 (1.68)	1.89 (0.96)	3.69 (2.25)	2.83 (1.38)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84.94 (16.22)	85.47 (14.22)	81.56 (15.57)	71.45 (20.94)	80.94 (25.23)	78.89 (16.05)	65.23 (26.38)	66 (23.91)
유무죄 판단의 확신감		87.78 (10.81)	83.6 (20.51)	75.63 (20.07)	74.55 (19.12)	76.76 (24.43)	66.39 (21.68)	64.54 (24.38)	58.61 (36.29)

판단 비율(약 0.00%~38.9%)보다 높았다. 기타응답을 제외하면, 양형 판단은 살인 사건의 경우 약한 양형으로 판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50.0% 이상),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조건에서는 강한 양형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20.0% 이내), 피해자의 역할이 있는 조건에서는 중간 양형으로 판단한 참가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5.0%와 12.5%).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역할이 없는 조건에서는 중간 양형(44.4% 이상),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에서는 약한 양형으로 판단한 참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6.7%와 46.2%).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역할이 있는 조건(4.05 이상 및 2.83 이상)에서 피해자 역할이 없는 조건(3.53 이하 및 2.24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죄가능성은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 가장 높았고(84.94와 85.47), 피해자 역할이 있는 살인 사건(71.45와 81.56), 피해자 역할이 없는 성폭력 사건(78.89와 80.94), 피해자 역할이 있는 성폭력 사건(65.23와 66.00) 순으로 낮았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은 살인 사건(74.55~87.78)이 성폭력 사건(58.61~76.76)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유무죄 판단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다만, 통제 및 효과 탐색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성별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유무죄 판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변인들의 주 효과만 포함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완전교차요인 설계로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상호작용 효과 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Wald Z 값이 모두 0에 매우 가까웠으며 주 효과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에 차이가 없었다($\chi^2 = 6.95, df = 4, p = .139$). 따라서 본 연구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분석에 한해서 주요변인 및 통제 변인들의 주 효과만을 포함하는 주 효과 모형을 검증하여 보고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chi^2 = 41.262, df = 130, p < .001$) 모형에 포함된 변인 중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만이 유무죄 판단을

표 3. 유무죄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예측 변인	B	SE	Wald Z	OR
Intercept	-5.72	2.00	-2.86	0.00
범죄유형	-0.97	0.87	-1.12	0.38
피해자 역할	-0.43	0.95	-0.45	0.65
유죄가능성	0.12	0.03	4.27***	1.13
성별	1.3	0.87	1.49	3.66

영가설 모형 $\chi^2 = 106.02, df = 134$

연구가설 모형 $\chi^2 = 41.26, df = 130$

$LR = 64.76, df = 4, p < .001$

주. 유무죄 판단 범주는 0이 무죄, 1이 유죄,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 < .001$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0.12$, Wald $Z = 4.27$, $OR = 1.13$, $p < .001$).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지각된 유죄가능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유죄 판단은 1.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유무죄 판단 확신감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유무죄 판단 확신

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 확신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범주예측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여기서도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과 성별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20$, $p < .001$), 모형에

표 4.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예측 변인	<i>B</i>	<i>SE</i>	<i>t</i>	<i>F</i>	<i>R</i> ²
Intercept	47.12	25.54	1.85 [†]	4.199***	0.36
범죄유형	-88.39	40.06	-2.21*		
피해자 역할	15.53	35.86	0.43		
유죄가능성	0.48	0.29	1.66		
성별	-6.61	5.28	-1.25		
범죄유형×피해자 역할	35.03	55.5	0.63		
범죄유형×유죄가능성	0.92	0.46	2.00 [†]		
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21	0.42	-0.49		
범죄유형×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39	0.65	-0.59		

주.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 < .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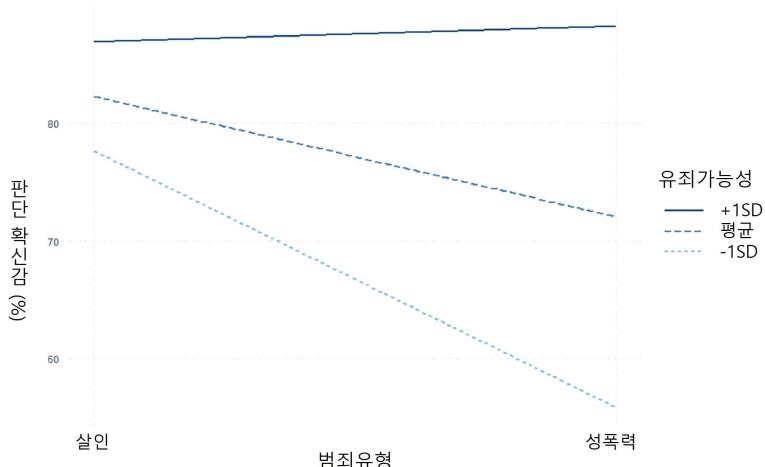


그림 1.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대한 범죄유형과 지각된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포함된 변인들은 유무죄 판단 확신감의 변량 중 약 36%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죄유형만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88.39$, $t = -2.21$, $p < .05$.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확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성폭력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확신감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범죄유형과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92$, $t = 2.00$, $p = .05$. 그림 1에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의 수준에 따라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성폭력에서는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수준에 따라 유무죄 판단 확신감에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지각된 유죄가능성과 판단자의 유무죄 판단 확신감의 관련성은 살인보다 성폭력에서 큰 영향이 있었다.

귀인과 유무죄 판단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귀인의 이유를 범주화한 변인인 귀인의 네 범주와 유무죄 판단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

였다(표 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귀인과 유무죄 판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chi^2 (df=3) = 28.14$, $p < .001$. 귀인 문항에 응답한 전체 120명의 참가자 중 105명(87.5%)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15명(12.5%)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건이 피고인 때 문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중 98.1%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시나리오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중 77.3%와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자와 상황에 모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중 82.4%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상황의 영향이 커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유무죄 판단 비율은 유사하였다(54.5% vs. 45.5%).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양형 판단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판단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범주예측 변인으로 하는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6). 여기서도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표 5. 귀인과 유무죄 판단의 관계

귀인 범주	무죄	유죄	전체	$\chi^2 (df=3)$
피고인 귀인	1(1.4%)	69(98.6%)	70(100.0%)	28.14***
상황적 귀인	6(54.5%)	5(45.5%)	11(100.0%)	
피해자 귀인	5(22.7%)	17(77.3%)	22(100.0%)	
행위자/상황 동시 귀인	3(17.6%)	14(82.4%)	17(100.0%)	
전체	15(12.5%)	105(87.5%)	120(100.0%)	

주. 몇 개 셀의 빈도수가 5보다 작아 추정된 카이제곱 값은 불안정할 수 있음.

*** $p < .001$

표 6. 양형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가능성의 효과

예측 변인	$B(SE)$	t	OR	95% CI for OR	
				LL	UL
Intercept(1 2)	14.61(4.47)	3.27 ^{**}			
Intercept(2 3)	16.36(4.52)	3.61 ^{***}			
범죄유형	10.91(4.96)	2.2 [*]	54822.14	6.27	224150800
피해자 역할	8.61(5.15)	1.67 [†]	5464.05	0.36	293602500
유죄가능성	0.16(0.05)	3.23 ^{**}	1.17	1.07	1.30
성별	0.99(0.46)	2.15 [*]	2.70	1.11	6.87
범죄유형×피해자 역할	-4.28(6.32)	-0.68	0.01	0.00	2537.83
범죄유형×유죄가능성	-0.11(0.05)	-2.02 [*]	0.90	0.80	0.99
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1(0.06)	-1.68 [†]	0.91	0.81	1.01
범죄유형×피해자 역할×유죄가능성	0.03(0.07)	0.46	1.03	0.90	1.20
				영가설 모형 $\chi^2 = -114.19$	
				연구가설 모형 $\chi^2 = -98.52$	
				$LR = 31.34, df = 8, p < .001$	

주. 양형 판단 범주는 1이 약한 양형, 2가 중간 양형, 3이 강한 양형,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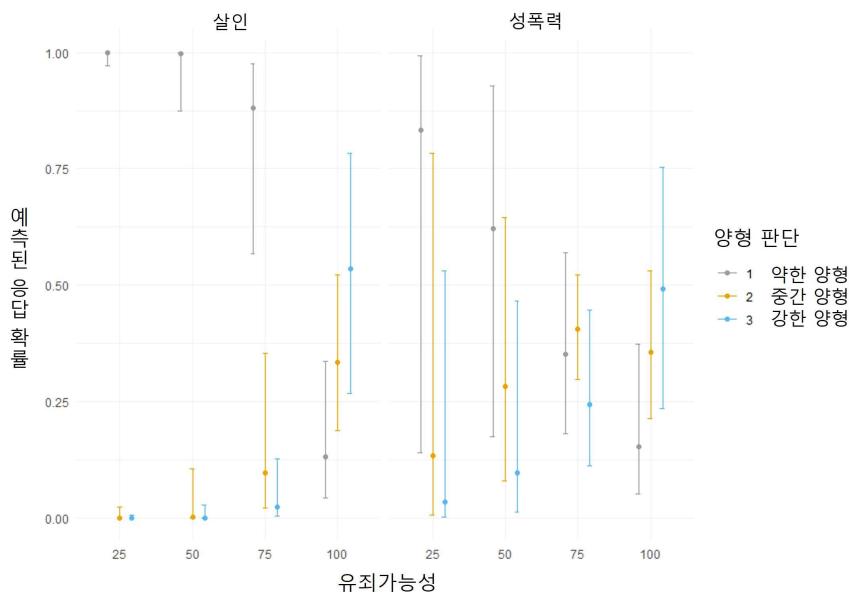


그림 2. 양형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지각된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형 판단은 범죄 유형($B = 10.91, p < .05, OR = 54822.14, CI$ for $OR = [6.27, 224150800]$) 및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B = 0.16, p < .01, OR = 1.17, CI$ for $OR = [1.07, 1.30]$)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범죄 유형과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11, p < .05, OR = 0.90, CI$ for $OR = [0.80, 0.99]$. 구체적으로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범죄유형이 성폭력인 경우에 살인인 경우보다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이 1.17배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범죄유형과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와 성폭력인 경우 유죄 가능성과 양형 판단의 관계는 달랐다.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 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간 양형과 강한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한 양형을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유죄 가능성이 낮을 때, 예측된 각 양형 판단을 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그러나 범죄유형이 성폭력인 경우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양형 판단 가능성이 달라지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범죄유형 및 피해자 역할과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이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피해자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을 범주예측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7). 양형 판단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8.08, p < .001$),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피해자 책임판단의 변량 중 약 34%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었다. 지각된 피고인

표 7.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유죄 가능성의 효과

예측 변인	B	SE	t	F	R ²
intercept	6.84	1.49	4.58***	8.08***	0.34
범죄유형	-2.48	1.80	-1.38		
피해자 역할	-2.02	1.81	-1.12		
유죄 가능성	-0.04	0.02	-2.28*		
성별	-0.14	0.28	-0.50		
범죄유형×피해자 역할	3.95	2.21	1.79 [†]		
범죄유형×유죄 가능성	0.01	0.02	0.55		
피해자 역할×유죄 가능성	0.03	0.02	1.42		
범죄유형×피해자 역할×유죄 가능성	-0.05	0.03	-1.78 [†]		

주. 범죄유형 범주는 0이 살인, 1이 성폭력, 피해자 역할은 0이 없음, 1이 있음, 성별은 0이 여자, 1이 남자임.

* $p < .1$, * $p < .05$, *** $p < .001$

의 유죄가능성만이 지각된 피해자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4$, $t = -2.28$, $p < .05$. 구체적으로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판단하였다.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와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모두 $p = .08$). 세 변인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바, 각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3은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범죄유형이 살인인 경우 피해자 역할에 따라 지각된 피해자 책임의 차이가 성폭력 사건에서의 차이보다 다소 작은 경향이 있었다.

그림 4에는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죄유형과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피해자 역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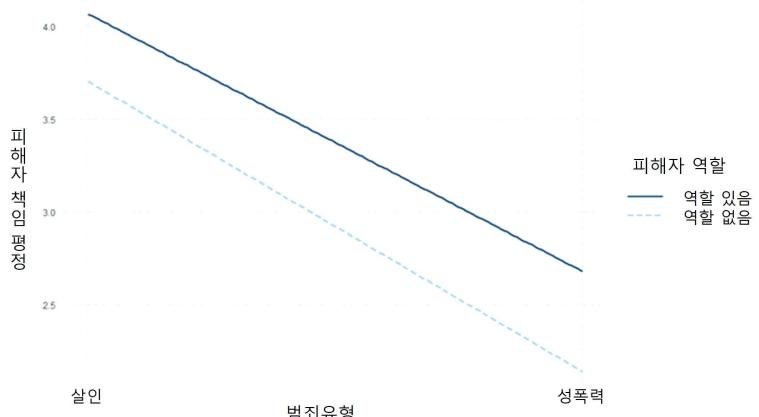


그림 3.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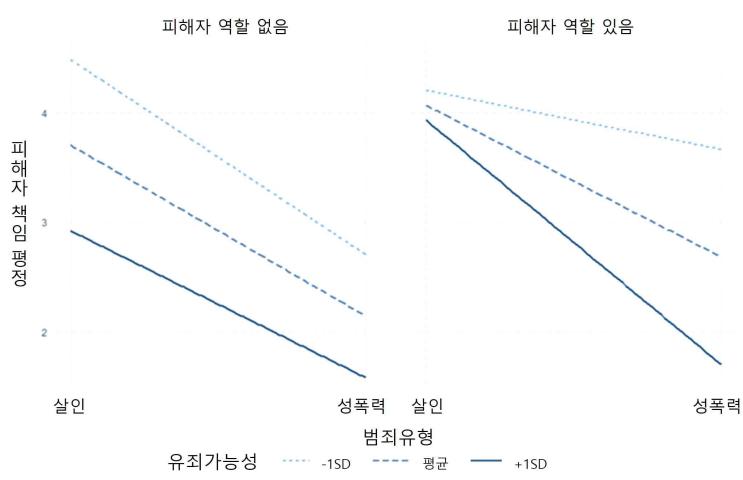


그림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피해자 역할 및 지각된 유죄가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준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경우(그림 4의 좌측),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의 효과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즉, 살인과 성폭력 사건 모두에서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역할이 있는 경우(그림 4의 우측), 살인에서는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에 따라 피해자 책임을 다르게 지각하지 않았고, 성폭력에서는 지각된 피고인 유죄가능성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역할, 피고인의 유죄성이 일반인의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유형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에 피해자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법률이 정하고 기대하는 바와 부합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무죄 판단

모든 실험조건에서 일반인들은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60% 이상)을 더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몇몇 조건에서는 무죄판단한 참가자가 전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시나리오 특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다만, 법적 판단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배심원

판단과 법관의 판단을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이 불일치한 사건 중 법관이 유죄판단하고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단한 사건의 비율이 반대의 불일치 양상을 보인 사건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84.4% vs. 15.6%). 즉, 실제 자료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이 피고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한유화,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재판과 실험상황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실험에 참가한 일반인들보다 재판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당사자들의 비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의 법적 판단 연구가 학문적인 의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절차를 적용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상황에서도 일반인들의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향이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일반인 법적 판단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적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뿐이었다. 이 결과는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역할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이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역할이 아닌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 도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고인의 양형 판단과 달리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파악할 수 없다. 즉,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는 법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유죄가능성을 평정하였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유죄가능성을 평정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유무죄 판단의 관련성을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지표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유죄가능성이 구성요건의 충족 가능성으로 치환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판단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의 의도나 위법성조각사유 등 다른 구성요건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사건 시나리오에서 피고인들은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유죄가능성을 실제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지각한 유죄가능성과 법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객관적이고 재현가능하려면 유죄가능성에 대한 개념 분석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 행위의 유무 또는 행위의 원인에 관한 판단이므로 귀인은 유무죄 판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사건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적인 것 또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응답한 본 사건의 원인을 네 가지 귀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무죄 판단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죄판단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무죄판단한 사람들은 다른 가능한 원인(당사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유죄판단의 기준이 높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 상황일 것이다. 법적으로 무죄판단은 '유죄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죄판단한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응답하였을 수 있다. 즉, 무죄판단자들이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유죄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일 가능성이 있다. 무죄판단자들과 유죄판단자들의 유죄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무죄판단자들이 대안적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Kuhn, Weinstock, & Flaton, 1994). 다만, 본 연구의 두 시나리오는 모두 피고인의 내심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피해자의 역할이 조작되어 피해자도 사건의 발생과정에서 피고인과 상호작용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던바, 무죄판단한 사람들이 대안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인지 사건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의를 기울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대안 가능성을 생각하는 능력이나 동기, 인지적 욕구 등의 관련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여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과 함께 분석한다면 유무죄 판단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무죄 판단 확신감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 확신감은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에서의 확신감보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확신감이 낮았다. 확신감 판단은 주로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Koriat, & Adiv, 2012). 확신감 판단에 대한 경험-기반 접근법(experience-based approach)은 어떤 선택의 확신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회상된 정보보다 선택할 당시의 경험에서 얻은 피드백에 기초한 추론이 주관적 확신감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가정한다(Reber & Unkelbach, 2010; Sperber & Wilson, 1986). 이 접근법에 따르면, 진실/거짓 판단에서의 확신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경험에서 오는 연상 단서들(mnemonic cues) 즉, 선택에 소요된 시간이나 얼

마나 쉽게 선택했는지 등의 메타인지적 느낌을 주는 단서들에 기초한다(Robinson et al., 1997; Zakay & Tuvia, 1998). 또 다른 접근법인 정보-기반 접근법(information-based approach)은 확신감 판단은 관련된 문제나 판단이 옳을 가능성을 평가한 기억으로부터 정보가 회상되는 분석적 과정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판단 과제에서 선택의 확신감은 선택지에 대해 떠오른 증거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Griffin & Tversky, 1992; Koriat et al., 1980; McKenzie, 1997). 두 접근법은 각각 확신감 판단이 증거 외적 요인과 증거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두 접근법은 모두 확신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누군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이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이미선, 2018) 범죄여부 즉, 피해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피해가 분명한 사건은 피해가 의심스러운 사건보다 판단이 수월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확신감의 경험-기반 접근법은 살인 사건에서의 높은 확신감을 예측한다. 또한, 피해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 또는 판단의 정보가 될 수 있다. 살인 사건은 성폭력 사건보다 증거가 더 강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정보-기반 접근법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 더 강한 살인 사건에서 판단 확신감이 더 높을 수 있다.

판단 확신감은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관계는 살인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1$). 판단 확신감에 대한 범죄유형과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범죄유형의 주 효과에 대한 추론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사건은 피해사실을 쉽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행위(유죄가능성)

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반면에 살인의 경우 피해사실이 분명하므로 판단 확신감의 변량 자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따른 변화가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근거를 찾기 위해 본 연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판단 확신감 변량은 살인 사건에서 334.86, 성폭력 사건에서 800.89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33) = 16.2, p < .001$). 그러나 판단 확신감의 변량 차이가 피해사실의 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의 타당성은 판단 확신감에 대한 피해사실 확실성의 효과 및 피해사실 확실성과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실험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 판단

판단 확신감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해서도 범죄유형의 주 효과가 관찰되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이 살인 사건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살인이 성폭력보다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므로(박성훈 등, 2014), 이 결과는 일견 비상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양형을 측정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양형을 서열수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범죄유형에 따른 양형의 차이는 절대적 차이로 이해될 수 없고 서열의 의미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양형 판단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약한 형량(살인의 기본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택한 비율이 모든 조건에서 50%를 넘었고, 성폭력의 경우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한 형량부터 강한 형량까지 비교적 고르게(평균적으로 약 30%) 분포하였다(표 2). 범죄유형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 조작한 다른 변인들의 수준이 모두 통합된 조건들의 차이이므로 두 범죄유형의 기본형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두 범죄유형 모두에서 기본형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양형 판단에 범죄유형 특

정적인 어떤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과의 양상을 보면, 살인보다 성폭력에서의 개인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 판단의 개인차가 성폭력에서 더 큰 것은 개인차 요인들의 영향력이 성폭력 사건에서 더 크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처벌 판단은 법이 정한 양형인자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얼굴, 연령, 성별 등도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얼굴, 고령의 피고인, 여성 피고인에게 더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Goodman-Delahunty & Sporer, 2010). 살인에서는 유죄가능성에 따라 양형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지만 성폭력에서는 그 변화가 개인차에 비해 크지 않은 범죄유형과 유죄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그림 2)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개인차 변인들의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확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와 종합한다면 이 편향적 요인들의 효과는 성폭력 사건에 내재된 피해사실의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범죄유형을 피해사실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조작하여 편향적 요인들의 효과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면 일반인의 양형 판단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살인의 양형 판단 빈도가 약한 양형에서 가장 높았던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처벌이 양형기준의 기본형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한국 사법체계의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조하은, 김재현, 2023)와 배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묻지 않고 제시된 시나리오의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을 평가하게 한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해석은 보다 직접적인 조사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는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도 영향을 주었다. 범죄유형이나 피해자 역할에 상관없이 유죄가능성이 높을수록 강한 양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들

도 두 변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양동옥 등, 2012). 이 결과 자체는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은 유무죄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 양형인자가 아니다. 한국의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 절차와 양형 판단 절차를 분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가 혼재되어 두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두 절차가 분리되어야 한다(공판절차이분론)는 법학자들의 주장(김병수, 2013, 2015)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일반인의 양형 판단은 피해자 역할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범죄유형이나 지각된 피고인 유죄 가능성과 관계없이 피해자 역할이 없을 때 중간 형량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피해자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배심원들은 양형을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에서 처벌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의 법적 판단이 법이 요구하는 규칙과 부합한다면, 양형에 피해자 역할이 고려되는 범죄(살인)에서만 이와 같은 상대적인 판단 경향이 관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피해자 역할과 범죄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은 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범죄유형에 따라 반영되기보다는 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정은 법적 규칙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인의 법적 판단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칙에 대한 지침 즉, 판사의 설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설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 및 효과검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의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조작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역할의 조작 효과는 상

대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피해자 책임의 수준은 모두 보통 이하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조작 수준은 피해자 역할이 가능성 정도의 효과($p < .1$) 만 가지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충분한 사례수와 강도 높은 조작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된다면 판사 설시의 구성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책임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상호교환적이다(양동옥 등, 2012).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지각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피해자 책임의 부적 관련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범죄유형과 피해자 역할은 상호작용하여 피해자의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었다($p < .1$). 구체적으로 살인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역할의 효과가 다소 큰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피해자 책임판단 양상이 법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양형판단에서 법이 요구하는 양형인자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의식적인 노력과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배심원들의 상식이 법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배심재판에서 판사의 설시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사의 설시가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한 설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이 불일치는 국민들의 법과 사법 판단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배심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설시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된 근거나 논리를 국민에 공개하여 그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계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수행되었던바, 연구 정보가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이 표본 특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집된 전체 자료의 약 20%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실험조건 당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사례수가 충분하지 못한 조건의 사례수는 양형 판단에 대해 산출된 일부 변인의 승산비(OR) 신뢰구간이 매우 넓은 것의 원인일 수 있다.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특정 반응 범주로 빈도가 편중되는 경우 이와 같이 매우 넓은 신뢰구간이 관찰될 수 있다(Irala et al., 1997; Mansournia et al., 2018).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일부 조건의 관찰빈도가 0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함과 동시에 조건당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한 재현 연구에서 결과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배심원들의 의사결정 합리성에 대한 추론을 위해 법률이 정한 양형기준이 다른 범죄유형을 조작하여 일반인의 법적 판단 경향성과 법의 요구가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배심원 의사결정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된 실무적 제안을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범죄유형마다 다른 양형을 각 범죄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양형을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양형기준에 제시된 기본 형량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처벌 수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실제 법적 판단 장면에서 기대되는 그들의 기능과 실제 일반인의 법적 판단 사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차이의 원

인을 탐색하기 위한 초기 시도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자소개

한유화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의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판단 및 의사 결정,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당사자에 관한 법률 및 형사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의사결정에서의 그 영향, 심리적 속성의 측정 방법 등에 관심이 있다.

이채윤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이다. 문화적 신념과 사회적 규범이 범죄 및 외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으며, 외상 생존자의 심리적 회복 기제를 탐색하고 있다.

이한희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심리학적 원리와 사회·인지심리에 관심이 있다.

정현우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석사과정 중에 있다. 심리학 연구방법론과 논쟁적 주제에서의 적극적 열린 마음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36.

김병수 (2013).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경희법학*, 48 (4), 425-453.

김병수 (2015).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형사법연구*, 27(1), 109-145.

<https://doi.org/10.21795/kcla.2015.27.1.109>

김보경, 김범준, 최종안 (2020).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309-327.

<https://doi.org/10.53302/kjfp.2020.11.11.3.309>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53-70.

박성훈, 김한균, 김영규, 박철현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VIII):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박철현, 박성훈 (2015).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4년. *공공정책연구*, 32(1), 73-96.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쳐별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27-49.

<https://doi.org/10.21193/kjspp.2010.24.2.002>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https://doi.org/10.18205/kpa.2012.17.3.002>

양형위원회 (2023). 시행중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4/robber_01.jsp 2025. 5. 24에 마지막으로 방문함.

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해설.

https://sc.scourt.go.kr/sc/krsc/pdf/sc_explan_doc.pdf 2025. 7. 13에 마지막으로 방문함.

이미선 (2018).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 67-83.

<https://doi.org/10.21193/kjspp.2018.32.2.004>

임하연, 박지선 (2023).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3), 305-320.
<https://doi.org/10.20406/kjcs.2023.8.29.3.305>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1), 45-66.
<https://doi.org/10.21193/kjspp.2020.34.1.003>

조하은, 김재현 (2023).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782> 2025. 5. 24에 마지막으로 방문함.

최승혁, 허태균 (2012). 절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27-140.
<https://doi.org/10.21193/kjspp.2012.26.4.008>

한유화 (2023). 국민참여재판의 평/판결 불일치 원인의 탐색: 2018년부터 2022년에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검토. *법과 사회*, 74, 63-95.
<https://doi.org/10.33446/KJLS.74.3>

Bieneck, S., & Krahé,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https://doi.org/10.1177/0886260510372945>

Bodenhausen, G. V., & Wyer, R. S. (1985). Effects of stereotypes i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267-282.
<https://doi.org/10.1037/0022-3514.48.2.267>

Brems, C., & Wagner, P. (1994). Blame of victim and perpetrator in rape versus thef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3), 363-374.
<https://doi.org/10.1080/00224545.1994.9711741>

Brownlow, S., Martinez, M., Porter, D., & Rosko, M. (2023). Sharing the Responsibility: Victim Blaming as a Function of Crime Type and Victim Behavior. *Psychology*, 14(8), 1288-1300.
<https://doi.org/10.4236/psych.2023.148071>

D', Agostino, P. R., & Fincher-Kiefer, R. (1992). Need for cognition and the correspondence bias. *Social Cognition*, 10(2), 151-163.
<https://doi.org/10.1521/soco.1992.10.2.151>

Delker, B. C., Means, K. K., Schwam, A., Patterson, A. L., Fogel, C. A., Brown, A., ... & McLean, K. C. (2024).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perpetrators, victims, and event depend on system justification beliefs and perpetrator atonement. *PloS one*, 19(12), e031198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311983>

Dyer, R. L., Pizarro, D. A., & Ariely, D. (2022). They had it co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blame and victim-blame. *Social Cognition*, 40(6), 503-527.
<https://doi.org/10.1521/soco.2022.40.6.503>

Genschow, O., & Vehlow, B. (2021). Free to blame? Belief in free will is related to victim blam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88, 103074.
<https://doi.org/10.1016/j.concog.2020.103074>

Goodman-Delahunty, J., & Sporer, S. L. (2010). Unconscious influences in sentencing decisions: A research review of psychological sources of disparity. *Australi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2(1), 19-36.
<https://doi.org/10.1080/00450610903391440>

Griffin, D., & Tversky, A. (1992). The weighing of evidence and the determinants of confidence. *Cognitive psychology*, 24(3), 411-135.
[https://doi.org/10.1016/0010-0285\(92\)90013-R](https://doi.org/10.1016/0010-0285(92)90013-R)

Irala, J. D., Fernandez-Crehuet Navajas, R., & Serrano del Castillo, A. (1997). Abnormally wide confidence intervals in logistic regression: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program results. *Revista Panamericana de Salud Pública*, 2, 268-271.
<https://doi.org/10.1590/S1020-49891997001000007>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24.
[https://doi.org/10.1016/0022-1031\(67\)90034-0](https://doi.org/10.1016/0022-1031(67)90034-0)

Karmen, A. (1984). *Crime victims*.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Kelley, H. H. (1973). The processe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8(2), 107-128.
<https://doi.org/10.1037/h0034225>

Koriat, A., & Adiv, S. (2012). Confidence in one's social beliefs: Implications for belief justification.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1(4), 1599-1616.
<https://doi.org/10.1016/j.concog.2012.08.008>

Koriat, A., Lichtenstein, S., & Fischhoff, B. (1980). Reasons for conf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6(2), 107-118.
<https://doi.org/10.1037/0278-7393.6.2.107>

Kuhn, D., Weinstock, M., & Flaton, R. (1994). How well do jurors reason? Competence dimensions of individual variation in a juror reasoning task. *Psychological Science*, 5, 289-295.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4.tb00628.x>

Mansournia, M. A., Geroldinger, A., Greenland, S., & Heinze, G. (2018). Separation in logistic regression: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87(4), 864-870.
<https://doi.org/10.1093/aje/kwx299>

McKenzie, C. R. (1997). Underweighting alternatives and overconfide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1(2), 141-160.
<https://doi.org/10.1006/obhd.1997.2716>

Niemi, L., & Young, L. (2016). When and why we see victims as responsible: The impact of ideology on attitudes toward victi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9), 1227-1242.
<https://doi.org/10.1177/0146167216653933>

Pendry, L. F., & Macrae, C. N. (1994). Stereotypes and mental life: The case of the motivated but thwarted tacticia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4), 303-325.
<https://doi.org/10.1006/jesp.1994.1015>

Reber, R., & Unkelbach, C. (2010). The epistemic status of processing fluency as source for judgments of truth.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1(4), 563-581.
<https://doi.org/10.1007/s13164-010-0039-7>

Robinson, M. D., Johnson, J. T., & Herndon, F. (1997). Reaction time and assessments of cognitive effort as predictors of eyewitness memory accuracy and confid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3), 416-425.
<https://doi.org/10.1037/0021-9010.82.3.416>

Sperber, D., &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Witte, L. P., & Flechsenhar, A. (2025). "It's Your Own Fault": Factors Influencing Victim Blam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0(9-10), 2356-2380.
<https://doi.org/10.1177/08862605241270030>

Zakay, D., & Tuvia, R. (1998). Choice latency times as determinants of post-decisional confidence. *Acta Psychologica*, 98(1), 103-115.
[https://doi.org/10.1016/S0001-6918\(97\)00037-1](https://doi.org/10.1016/S0001-6918(97)00037-1)

1 차원고접수 : 2025. 06. 04.

수정원고접수 : 2025. 07. 24.

최종제재결정 : 2025. 07. 25.

Legal judgments of lay people: The effect of crime type, the victim's role, and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Yuhwa Han^{1),2)} Chae Yun Lee¹⁾ Han Hee Lee¹⁾ Hyun Woo Jeong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mployed a $2 \times 2 \times 2$ factorial design experiment, manipulating three factors to two levels each: the type of crime, the victim's role, and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The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the lay person's verdict and sentencing of a defendant, as well as their rating of the victim's responsibility, are affected by legal factors. Data were obtained from 135 juror-eligible adul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lay verdicts and sentencing decisions vari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and that confidence in the verdict was higher in sexual assault cases than in murder cases. Participants in sexual assault conditions tended to choose a higher sentence than those in murder conditions. In murder cases, the higher th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the stronger the sentencing decision made by lay people. In contrast to the no-victim's role conditions, the likelihood of the defendant's guilt did not affect the victim's responsibility rating in murder cases with a victim's role, where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found in sexual assault cas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lay people's legal decisions are not aligned with the established legal framework. The authors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likelihood of jurors making reasonable legal decision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refining the related system.

Key words : crime type, victim's role, defendant's likelihood of guilt, verdict, sentencing

부록. 시나리오 예시(살인-피해자 역할 없음-피고인 유죄성 낮음 조건)

[사건번호 132]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하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일을 해오면 칭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회사에서 해고되자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해고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찰 측 주장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직장의 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재취업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이 해고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를 원망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자신을 해고했던 피해자에게 돌려줄 물건이 있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날 약속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공업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의 목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있던 칼을 챙겨 나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을 의미하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검찰 측 증거

- 피고인 전 직장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료:** 피고인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편이었음. 평소에 피해자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은 별로 없었음.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잘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음.
- 피해자 아내/남편:** 사건 당일 피해자는 퇴근 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음. 피해자 아내/남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꺼림칙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난 것 같아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면서 집에 오게 할 수 없으니 나갔다 오겠다고 했음.
- 국과수 부검의 증언:** 피해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경동맥이 잘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이 도구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공업용 칼과 동일한 것으로 범행도구에서는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으나 다른 것은 검출되지 않았음.
- 피고인 옆 자리 동료:**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공업용 칼은 피고인의 것으로 피고인이 공업용 칼에 붙여둔 스티커가 있고, 그 스티커가 특별한 것이라 기억하고 있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1:**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에 다투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음. 피해

자가 뭐라고 화가 나서 말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듣지 못했고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음.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에 따르면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일을 이것 저것 트집잡아 다시 하라고 해서 과도하게 야근을 하거나 일을 잘 해가도 쉽게 결재해주지 않고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등 동료와 다르게 대하면서 피고인이 불필요한 좌절 경험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좌절했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공업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한다.

변호인 측 증거

- 피고인 회사동료의 증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하라고 한 일을 하느라 자주 야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성과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아 좌절스러워 하였음.
-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 피고인은 한동안 직장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해고된 이후에는 오히려 나아져서 치료를 중단하였음.
- 피고인 아내/남편의 증언:**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갔음. 해고당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망스럽지만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피해자의 지적을 안 받아도 되니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이유도, 죽일 이유도 없었음.
-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와 만나 다투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님. 공업용 칼은 내가 쓰던 물건이 맞지만 회사 돈으로 산 물건이어서 회사에 두고 퇴직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님.
-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2:**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억울해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없을 때까지 수정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매번 칭찬을 하냐며 해고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며 이제 그만 하자고 하였음. 그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음.

판사의 지침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검사에게 있고, 여러분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판단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